

인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안

-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 -

인 천 광 역 시

인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안

-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-

의안 번호	8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09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

1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
- 면 적 : 5,428,283㎡
 - 자연녹지지역 ⇒ 일반상업지역(191,216㎡)
 - 자연녹지지역 ⇒ 준공업지역 (3,544,786㎡)
 - 일반공업지역 ⇒ 준공업지역 (840,975㎡)
 - 미지정지 ⇒ 준공업지역 (748,664㎡)
 - 미지정지 ⇒ 일반공업지역(102,642㎡)

3. 입안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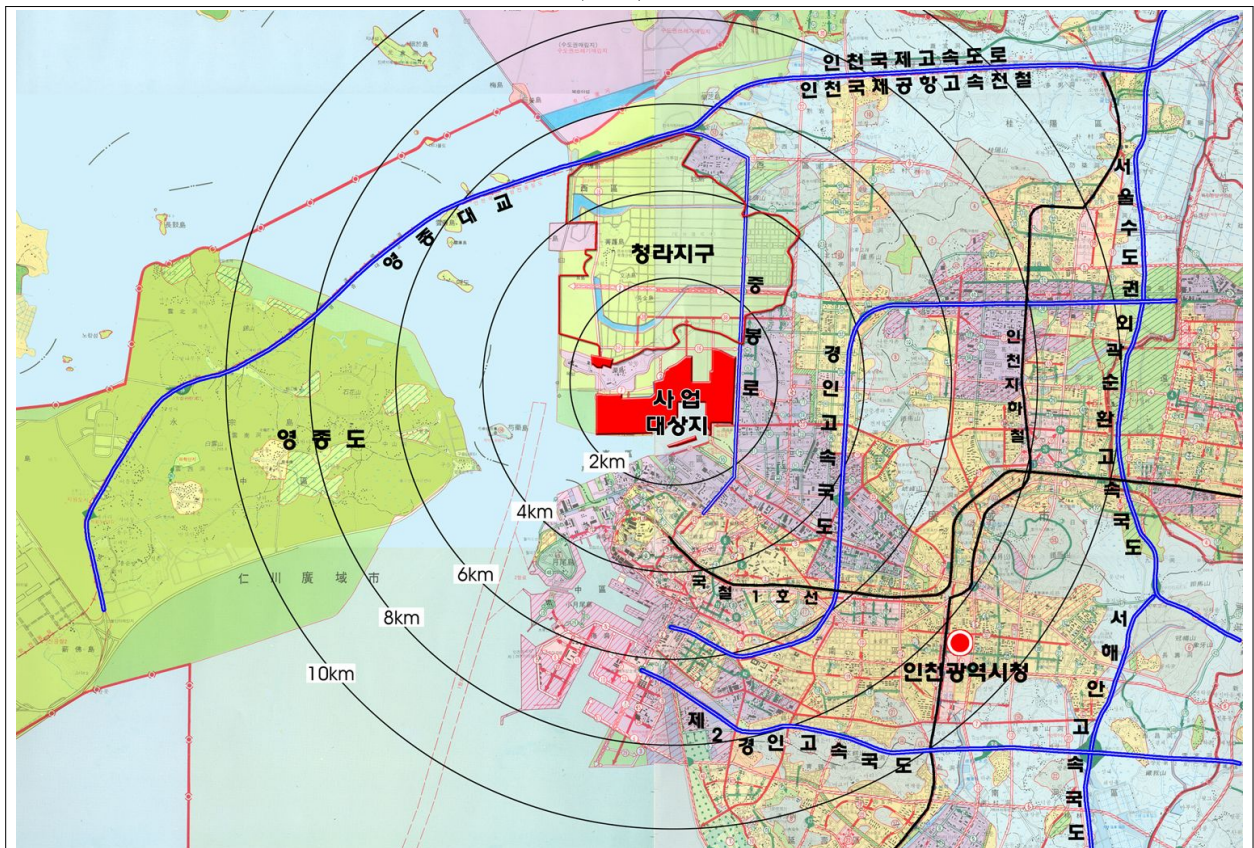
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총 계	5,428,283	-	5,428,283	100.0	
일반상업지역	-	증) 191,216	191,216	3.5	
공업지역 소계	840,975	증) 4,396,092	5,237,067	96.5	
일반공업지역	840,975	감) 738,333	102,642	1.9	
준공업지역	-	증) 5,134,425	5,134,425	94.6	
자연녹지지역	3,736,002	감) 3,736,002	-	-	
미 지 정	851,306	감) 851,306	-	-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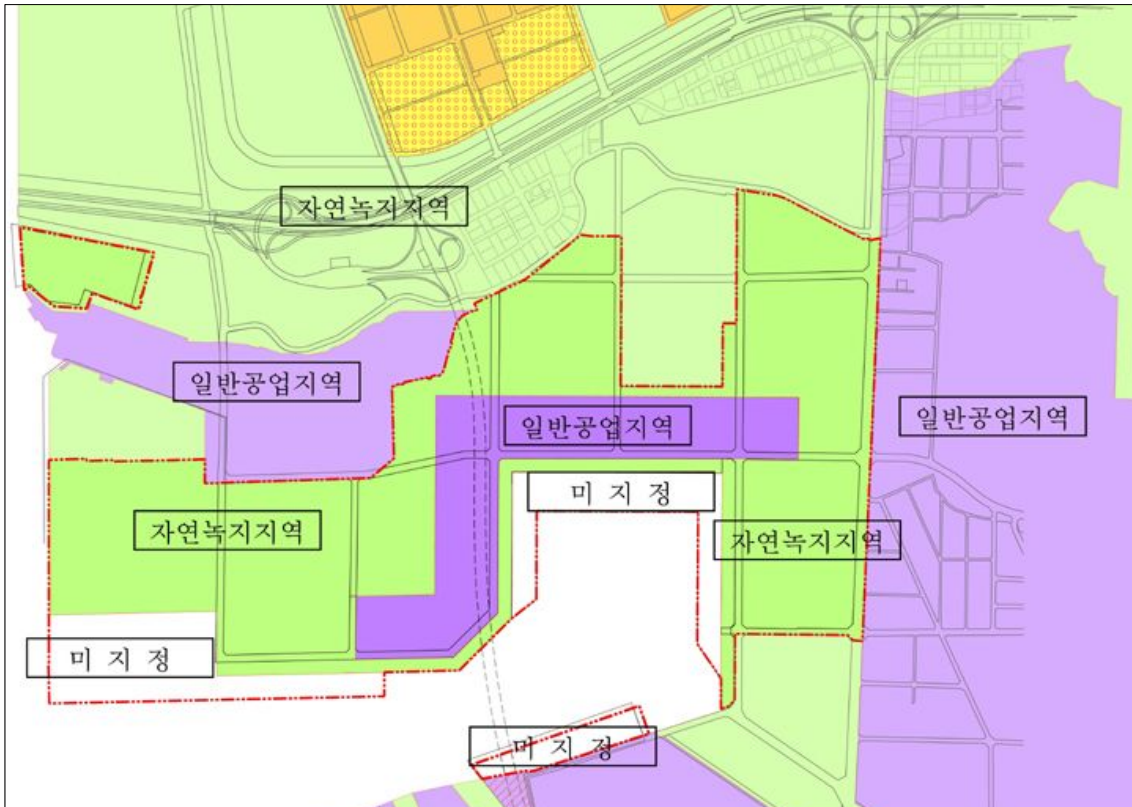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 정	변 경			
1	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	자연녹지 지역	일반상업 지역	191,216	1,000이하	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
2	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	자연녹지 지역	준공업 지역	173,690	400이하	공업기능과 물류기능을 수행 하고 북측 청라지구, 동측 일반 상업지역, 남측 일반공업지역의 완충 기능을 고려한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
3	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	일반공업 지역	준공업 지역	840,975		
4	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	자연녹지 지역	준공업 지역	3,371,096	400이하	항만지원시설 유치와 경공업 수용을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
5	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	미 지 정	준공업 지역	748,664	400이하	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매립지의 항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
6	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	미 지 정	일반공업 지역	102,642	400이하	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매립지의 항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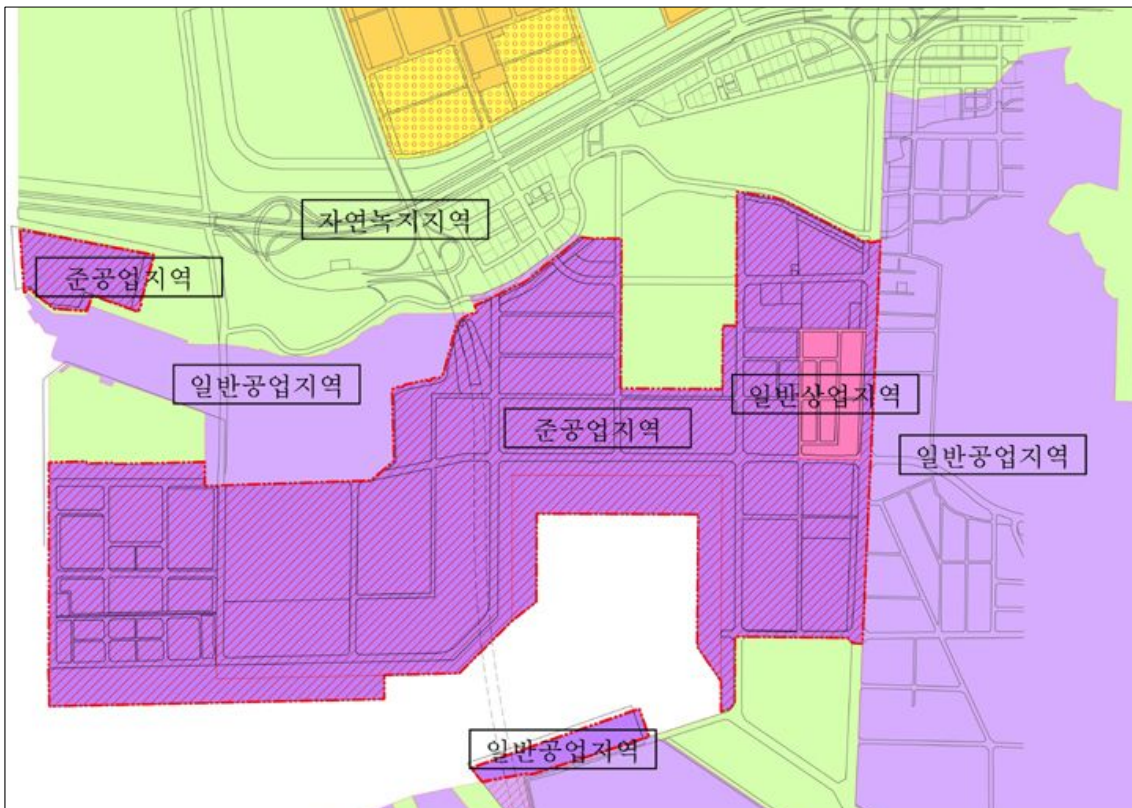
< 위치도 >



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 -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-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4. 입안사유

-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의 공업, 항만물류 기능과 업무, 서비스 기능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을 변경결정하고자 함

5. 추진경위

- 2005.12.28 : 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(2,101,277m²)
- 2006.12.18 : 북항일원 일부지역 공업지역 지정(840,975m²)
- 2007.04.25 : 2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(979,017m²)
- 2008.12.01 : 3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(2,184,200m²)
- 2009.09.15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입안 공고·열람

6. 주민의견청취 현황

- 청취기간 : 2009.09.15~2009.09.28(14일간)
- 청취방법 : 일간신문(2개), 서구청 게시판, 시 홈페이지
- 청취결과 및 관련부서 의견 : 별도첨부